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시 보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 장

제 40호 2015. 4.16(목)

공 고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1

○개간사업 대상지 선정사항 공고.....36

회 람										
--------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9

남원시 공고 제2015-537호

「남원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6일

남 원 시 장**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가. 규제완화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령」에 명시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과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기간과 위탁료 산출기준을 신설함.
- 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저공해 차량 주차료 감면 사항과 전라북도 여성친화 3대서비스 일환으로 아동 등 배려 공영 주차장의 면수를 확대하여 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가. 주차요금 경감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
- 나.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기간, 위탁료 산출기준을 정함(안 제6조)
 - 위탁관리기간을 정하고, 위탁료 산정시 위탁기간 중 운영일수로 계산하여 규제를 완화함.
- 다. 아동 등 배려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을 정함(안 제11조의2)

- 여성의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동 등 배려주차
구획을 3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대해 10퍼센트 이상으로 정함.
라. 그 밖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

3. 의견 제출

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남원시장(참조 : 교통과장)

- 우편번호 : 590-701 /주소 :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번지)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620-6718), 직접 방문, 컴퓨터 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교통과(☎063-620-65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5. 4. .
 제출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교 통 과 장

1. 개정이유

- 가. 규제완화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령」에 명시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정
에 따른 일부개정과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기간과 위탁료 산출기준을 신설함.
- 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저공해 차량 주차료 감면 사항과 전라북도 여성
친화 3대서비스 일환으로 아동 등 배려 공영 주차장의 면수를 확대하여
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가. 주차요금 경감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
- 나.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기간, 위탁료 산출기준을 정함(안 제6조)
 - 위탁관리기간을 정하고, 위탁료 산정 시 위탁기간 중 운영일수로 계산
하여 규제를 완화함.
- 다. 아동 등 배려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을 정함(안 제11조의2)
 - 여성의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동 등 배려주차구획
을 3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대해 10퍼센트 이상으로 정함.
- 라. 그 밖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5. 4. 16. ~ 2015. 5. 7.(21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중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 시행령」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을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안의 주차장에 적용한다.

제3조 제1항 중 “제7조 및 제12조”를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를 “긴급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한 때”를 “이용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않은 경우에는”을 “않은”으로, “때에”를 “때에는”으로, “부과한다.”를 “부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초과시간에 대하여는”을 “초과시간은”으로, “부과한다.”를 “부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중에서”로, “차량에 대하여는”을 “차량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자가운전”으로, “동반한 일반차량”을 “동승한 차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자가운전”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자가운전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남원시”를 “시”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에너지절약시책(「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제3조 제4항제4호 중 “경우”를 “차량”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세청장 또는 시장”을 “국세청장 및 시장”으로 한다.

제3조의2 제1항제3호다목 중 “필요하다고 정”을 “필요하다고 인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현황조사는 법”을 “현황조사는 법 제2조”로, “구분”을 “구분하여”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각각 구분”을 “구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적정성을 검증하되,”를 “적정성검증·유지 및 관리에 있어서”로,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해야”를 “의무를 다하여야”로 한다.

제5조의 제목“(주차장의 표지)”를“(주차장의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를 “노상주차장의 표시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로, “표지는”을 “표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차제한 차량”을 “주차제한차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표지”를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차장 위치안내 표지”를 “노외주차장 위치안내 표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3조제3항”으로, “사

람”을 “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 또는 개인”을 “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주차장에 대해서는”을 “주차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위탁료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공영유료주차장 : 점용면적(m²)×해당(인근)토지의 공시지가×25/1,000×점용기간(년)×운영일수/365×지수

※ 지수 = 동·읍면지역별 1회 주차요금(30분기준)/동지 역 1회 주차요금 (30분기준)

제7조제1항 중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조성사업
3.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입지 및 재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7.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부”를 “반환”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귀책사유

로 인하여”를 “귀책사유로”로, “의하여 환부한다”를 “따라 반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잔여매수”를 “남은 매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을 “법 제10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때에는 제한시간(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때에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폭원,”를 “너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표준규격에 대하여는”을 “표준규격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인하여 당해”를 “해당”으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을 “지장이 없으면”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5퍼센트”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5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의 설치기준은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동반”을 각각 “동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장소”를 “위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감시가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제11조의2제3항제4호 중 “근접한 곳”을 “가까운 위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구분하여 별표 11에 따른 아동 등 동반마크를 표시하여야”를 “구분하며, 그 규격과 내용은 별표 11과 같이”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의2”를 “법 제12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300퍼센트이하”를 “500퍼센트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개”를 “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3.6배/도로의 너비”를 “36/도로의 너비 배”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1.8배미”를 “1.8배 미”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차장에 대하여는”을 “노외주차장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9조제1항”을 “「주차장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공동주차장으로서”를 “공동주차장으로”로,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하인 때”를 “이하인 경우”로, “제외하고는 본”을 “제외하고는 해당”으로, “때까지 타”를 “때까지 다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공하고자 하는”을 “제공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 관한 사항은 노외주차장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요금으로서”를 “요금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은 공영”을 “시장은”으로, “사유로 인하여”를 “사유로”로, “된 때”를 “된 경우”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 부설주차장의”를 “경우의 부설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정한다.”를 “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산정한다.”를 “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률 제21조”로,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를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을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필요한”으로, “공영주차장”을 “노외주차장”으로, “「한국은행법」”을 “「한국은행법」 제86조”로, “산정한다.”를 “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산정한다.”를 각각 “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로, “동법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를 “같은 법률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조에”를 “제14조 별표 3 비고 제10호”로, “호의”를 “호의 기준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옥내주차장”을 “건물안 주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를 “평탄 설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용표지를 하여야 한다.”를 “전용표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용이한”을 “쉬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설치하도록 한다.”를 “설치”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과징금과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을 “과징금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을 “시장은 과징금을 부과할”로, “납부기간”을 “납부기한”으로,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를 “적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로, “발부일”을 “발급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 제3항 단서 중 “지정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을 “지정한 날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납부기한까지”를 “시장은 납부기한까지”로, “발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체납처분”을 “징수”로, “강제 징수한다”를 “징수한다”로 한다.

별지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조성된 공영주차장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제11조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4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 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 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 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 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수×10)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수×1) ○ 옥외수영장 : 정원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관리지역 내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 적용은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한함. 다만, 「건축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은 제외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 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포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 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 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 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 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 가. 2단 단승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드는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u>----- -----.</p>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u>남원시 지역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u></p>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u>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안의 주차장에 적용한다.</u></p>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 규정을 정하여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p>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① ----- ----- <u>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u>----- ----- ----- ----- ----- ----- ----- ----- ----- ----- ----- ----- -----</p>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② -----
----- 긴급자동차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 방법에 따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③ -----
----- 이
용한 경우-----

1. 제8조제1항의 방법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1. -----
----- 않은-----
----- 때
에는 -----
----- 부과

2. 주차요금은 30분단위로 계산하되 매 30분단위 이상 주차의 경우 매 30분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10분단위로 하여 별표 1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
----- 초과시간은-----

----- 부과

④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이용

④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비사

하는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경감한다.

1.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2.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자가운전 차량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3. 정부시책 및 남원시의 중요시책에 참여하는 차량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가. 에너지절약시책(「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경형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나. (생략)

<신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50퍼센

업용 차량 중에서 - 차량은-----.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자가운전 -- 동승한 차량-----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자가운전하는 --

3. ----- 시-----

가. 에너지절약시책(「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나. (현행과 같음)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4. ----- 차량 -----

트

5.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세청장 또는 시
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증(스
티커) 표시를 부착한 차량 :
전액감면(발급일로부터 1년
간)

제3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
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
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를 실시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실태조사 내용

가. 나. (생략)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
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
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

5. -----

국세청장 및 시장-----

제3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① -----

1. 2. (현행과 같음)

3. -----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 필요
하다고 인정-----

4. -----

가. ----- 현황조사는
법 제2조-----

구분하여 --

나. -----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주차제한차량-----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

----- 표지-----

④ 주차장 위치안내 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9에 의한다.

④ 노외주차장 위치안내 표지-----

따른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법 제13조제3항-----

----- 자-----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법인 또는 개인

1. -----

----- 자-----

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
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
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기
탄의 경우-----

③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
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
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
가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
의 8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그 밖의 경우-----

③ -----

-----주차장은-----

④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기간
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 설>

제7조(주차장의 설치) 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후, 도지사의 실시계획 인가 또는 시장의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위탁료의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공영유료주차장 : 점용면적 (m²)×해당(인근)토지의 공시지가×25/1,000×점용기간(년)×운영일수/365×지수

※ 지수 = 동·읍면지역별 1회 주차요금(30분기준)/동지역 1회 주차요금(30분기준)

제7조(주차장의 설치) ① -----

----- 공영주차장-----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킬로미터)/8

2. (생략)

③ (생략)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3. (생략)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분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기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환부한다.

한정한다)-----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킬로미터)/8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

1. -----
-- 다른 -----

2. 3. (현행과 같음)

② -----
----- 반환-----

----- 귀책사유로-----

----- 따라 반환한다.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의2(아동 등 배려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아동 등 배려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아동 등 배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동반한 여성 운전자
2. 임산부 및 임산부를 동반한 여성 운전자

③ 아동 등 배려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 해당 -----
----- 지장이 없으면 -----

제11조의2(아동 등 배려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

-----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5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의 설치기준은 10퍼센트 -.

② -----

1. -----
----- 동승 -----
2. -----
----- 동승 -----

③ -----

한다.

- 1. (생략)
-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정성이 확보되는 장소

3. 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④ 아동 등 배려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표 11에 따른 아동 등 동반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주차전용 건축물)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3조의2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2. (생략)

-----.

- 1. (현행과 같음)
- 2. -----

----- 위치

3. 감시가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

----- 가
까운 위치

④ -----

----- 구분하며, 그
규격과 내용은 별표 11과 같이-
-----.

제12조(주차전용 건축물) 법 제12조의2-----

-----.

- 1. 2. (현행과 같음)

3. 용적율 : 1천 300퍼센트이하

4. 높이제한 : 다음 각 목의 배
율 이하로 하되, 대지가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
는 가장 넓은 도로를 적용한
다.

가. (생략)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
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
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
6배/도로의 너비. 다만,
배율이 1.8배미만인 경우
에는 1.8배로 한다.

제13조(주차장설치 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
설물 및 설치기준) ① 법 제19
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3. ----- 500퍼센트
이하

4. -----

둘- -----

가. (현행과 같음)

나. -----

----- 36
/도로의 너비 배. -----
----- 1.8배 미-----
-----.

제13조(주차장설치 심의 등) ----

---- 노외주차장은 ----

-----.

1. ~ 3. (현행과 같음)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
설물 및 설치기준) ① 「주차장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삭 제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생 략)

② 공동주차장의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1대 이상의 주차면적의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리 하지 아니한다.

③ 부설주차장의 1대당 주차 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18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때에는 주차대수 1대당 소요 대지면적은 11.5제곱미터로 하며, 부설주차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시설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

② 삭 제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공동주차장으로 -----

예외로 한다.

③ -----

----- 이하인 경

우 -----

----- 제외하고는 해당 -----

----- 때까지 다른 -----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① 법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의 3제2항에 따른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종류와 규모는 제한이 없으며,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반의 이용시간, 관리비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 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 규정을 신고한 때에는 규칙 제8조제1항 및 규칙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8조(비용납부자와 설치의무 면제)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8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무상사용증을 교부할 공영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

① -----

----- 제공하려는 -----

-----.

②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 관한 사항은 노외주차장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비용납부자와 설치의무 면제) ① -----

----- 예외로 한다.

② -----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
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
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구획에 사
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
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
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
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
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
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
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
(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
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
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

산정

2. -----

해당 -----

산정

3.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

같은 법률

제21조 -----
----- 6개월 이내에 평
가한 가액

4. ----- 노외
주차장의 건설에 필요한-----

노외주차장-----

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조사·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의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에

「한국은행법」 제86조-----
----- 산정

② -----

-----.

1. -----

----- 산정

2. -----

----- 산정

3. ----- 「부동산
가액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따라 감정평가 업자가 6월 이
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
기준) ① 규칙 제3조에 따라 설
치하는 장애인의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적합한 위치에 설
치하여야 한다.

- 1. (생 략)
-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 3. (생 략)
-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
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
탄하게 하여야 한다.
- 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지를 하여야 한다.
- ③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
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
여야 한다.

----- 같은 법률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
기준) ① 제14조 별표 3 비고 제
10호 -----
---- 호의 기준에 -----

- .
- 1. (현행과 같음)
- 2. 건물안주차장-----

- 3. (현행과 같음)
- ② -----

-----.

- 1. -----
----- 평탄 설치

- 2. ----- 전용표지

- ③ 장애인-----

-----.

1. 주차장 입구에는 별표 10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제20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과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간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술 또

1. -----

----- 쉬운 -----
----- 설치 -----

2. -----

----- 설치 -----

제20조(과징금 처분) ① -----
----- 과징금과 -----

② 시장은 과징금을 부과할 -----

----- 납부기한 -----
----- 적은 납부통지서를 발급 -----
----- 하여야 -----
----- 발급일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지정기일
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
 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
 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
 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
를 주어야 한다. ----- 지정한
날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

④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

 ----- 발급-----

⑤ -----

 ----- 징수-----
 ----- 징수한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공고 제2015 - 544 호

공 고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5조 및 개간업무추진에관한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3-294호)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대상지 선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4 . 16 .

남 원 시 장

- 1. 사 업 명 : 개 간
- 2. 위 치 : 남원시 운봉읍 권포리 산113-1,113-4, 113-9 번지
- 3. 선정 면적 : 2,678 m²(지적 : 2,678 m²)
- 4. 목 적 : 개 전
- 5. 사업예정기간 : 2015. 5. . ~ 2016. 5. 31.
- 6. 사업시행자 : 남원시 운봉읍 화신길21 장호원
- 7. 열람 장소 : 남원시청 농정과(농촌시설담당) (☎ 063-620-6386)